

조선후기 향교의 지역성*

-정조 연간 강릉향교의 석전제 祭需 사건을 중심으로-

안 세 현**

< 目 次 >

I. 머리말	2. 석전제 제수의 規式 문제
II. 석전제 제수를 둘러싼 사건의 시말	3. 정책의 입안과 대응 방식의
III. 중앙 관료와 지역 유생의 갈등 지점	문제
1. 석전제 제수의 海弊 문제	IV. 맺음말

<국문 초록>

본고는 강원지역의 유교문화를 탐색하기 위한 장기 기획의 일환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정조 연간에 있었던 강릉향교의 석전제 祭需 사건을 중심으로 중앙 문화와 지역 문화의 갈등 양상을 살펴보았다.

1791년(정조 15) 강원도 영동 지역의 海弊를 혁파하는 방안의 하나로 강릉향교 석전제의 제수를 『국조오례의』에 근거하여 건어[魚鱸]를 70% 넘게 줄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강릉의 유생들은 석전제 제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점, 『국조오례의』에 제수의 수량에 대해 정해놓지 않았다는 점, 대구어는 강릉의 토산품이며 공납으로 인한 폐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며 원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8057497).

** 강원대학교 한문교육과 부교수 / shahn@kangwon.ac.kr

래대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유생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순시를 온 관찰사를 찾아가 밤새 농성하였으며, 이후 경향의 유림들에게 通文을 돌려 처분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한편 유림 세력을 규합하였다. 또한 체포된 주동자를 탈취하여 향교에 숨기고 상소문을 들고 대거 상경하는 등 사태가 확대되었다. 조정에서는 서울로 상경한 유생들을 검거하여 강원도 감영으로 압송하고 강릉에 안핵어사를 파견하여 관련자들을 대거 조사하였다. 결국 사건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던 유생들은 유배되었으며, 신문을 받다가 유생이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사실 이 사건은 강릉향교 석전제의 제수가 海弊인지, 제수의 표준적인 規式은 무엇인지가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는 주변으로 밀려나고 중앙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강릉 지역 유생들의 태도와 이에 대한 처벌 문제로 변질되었다. 사태가 악화된 것은 애초 정책을 입안하면서 당사자인 강릉 유생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중앙에서 파견된 부사와 관찰사 그리고 조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기 때문이다. 중앙의 문화를 표준으로 설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강요한 데서 온 갈등이었던 것이다.

【주제어】 강원도, 유교, 지역성, 강릉향교, 석전제, 제수, 국조오례의

I. 머리말

『정조실록』 15년(1791) 6월 5일조에 다음의 기사가 실려 있다.

강원도 관찰사 尹師國이 바닷가에 사는 백성들의 폐단을 바로잡으라는 명을 받고, 영동지방 9개 고을에서 석전제에 쓰는 魚鱸(곧 건어)가 2백여 마리나 되는 것은 예가 아니라 생각해서, 조정에 보고하여 수량을 줄이고 태학의 規式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런데 윤사국이 관내를 순시하다가 강릉부에 이르자, 고을의 유생들이 단자를 올리고 길을 막으면서 계속 농성을 하였다. 또 여러 고을에 通文을 돌려 ‘도백은 어떤 사람이기에 기꺼이 성인의 죄인이 되려고 한단 말인가!’라고 하

었다. 강릉 부사 李集斗는 이것을 제지하지 못하고 편지를 윤사국에게 보내면서 유생의 통문도 함께 보냈다. 윤사국이 노하여 이집두로 하여금 주동자 네 사람을 체포하여 감영으로 압송하게 하였다. 고을의 유생 수백 명이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체포된 유생을 빼앗아 향교에 감추어 두었다. 그러고는 1백여 명의 유생을 모아 서울로 올라가 상소를 올리려고 길을 떠났는데, 도주하였던 유생들도 그 무리 속에 끼어서 서울로 갔다. 윤사국이 장계를 올려 조정에 보고하고 이집두에게 죄줄 것을 요청하였다.

상이 놀라며 “儒者의 관을 쓰고 유자의 옷을 입은 자들이 뒷사람을 능멸하는 것도 부족하여 이처럼 패거리로 지어 나쁜 짓을 하니, 나라의 기강과 습속에 관계되는 것이 적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러고는 형조에 명하여 서울로 올라온 유생들을 잡아다 강원도로 압송해서 죄주도록 하고, 이집두는 파직시키고 붙잡아 오도록 하였다.1)

강릉의 유생들이 향교의 석전제에 쓰는 祭需를 줄이라는 관찰사의 명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유생들은 순시를 온 관찰사를 객사에 거의 구금하다시피 하면서 철야로 농성을 벌였다. 끝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관찰사가 감영으로 돌아가자, 通文을 돌려 관찰사를 성토하는 한편 지역의 유림 세력을 규합하였다. 더욱이 체포된 주동자들을 원주의 감영으로 압송되는 길에 탈취하여 향교에 숨겨 두었다. 그러고는 1백여 명의 유생들을 모아 임금에게 상소하겠다고 서울로 올라갔다. 강릉의 유생들은 관찰사의 지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죄인을 탈취하여 은닉하는 등 儒者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벌인 것이다. 이 때문에 정조는 이 사건을 나라의 기강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1) 『정조실록』 15년(1791) 6월 5일. “江原道觀察使尹師國, 承命釐海戶之弊, 以嶺東九邑釋奠祭魚鱸, 多至二百餘, 非禮也, 狀聞而減其數, 以遵太學之式. 師國行部到江陵府, 邑儒投單遮道, 閤聽不已. 且發通於列邑曰: ‘道伯何人哉, 甘作聖人之罪人?’ 府使李集斗不能何問, 以書貽師國, 齎送儒通. 師國怒, 使集斗械送其首事者四人. 邑儒數百人, 要於路而奪之, 匿諸鄉校, 聚黨百餘人, 將詣京師投疏, 以逃還者, 混於衆以行. 師國狀聞其狀, 請集斗置罪. 上驚曰: ‘冠儒服儒, 凌上之不足, 爲此作黨悖惡之舉, 紀綱習俗, 關係非細.’ 命刑曹執送本道勘律, 集斗罷其官, 命拿問.” 같은 기사가 『승정원일기』 및 『비변사등록』에도 실려 있는데, 실록보다 내용이 자세하다.

서울로 올라온 유생들을 전부 잡아들이고 해당 고을의 수령인 강릉 부사를 파직하라고 명한 것이다.

이후 조정에서는 按覈御史(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는 어사)를 강릉에 파견해서 향교와 서원의 임원을 비롯하여 강릉 지역의 유생 수십 명을 조사하였다. 주동자는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그 중 한명은 조사를 받던 중에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강릉향교의 제수를 줄이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강릉의 유림 사회 전체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렇다면 강릉 유생들에게 향교의 석전제가 어떠한 의미가 있었기에 제수를 줄이라는 관찰사의 지시에 이처럼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일까. 유림 사회를 이끌어가는 유생들이 대거 체포되고 심지어 유생 하나가 신문을 받다가 죽는 사태까지 초래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향교는 고려시대에 설립되었으며 성리학을 국시로 한 조선이 개국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정착되었다가 조선중기에 서원이 설립되면서 향촌사회에서 역할과 기능이 쇠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대개 영남·호서 지역의 사례를 일반화하여 얻어진 것이며, 전국적으로 모두 같은 양상을 보인 것은 아니다. 강원도는 원주와 강릉을 제외하고는 유생들의 활동이 미진하였다. 특히 강원도는 여타 지역에 비해 서원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조선후기까지 향촌사회에서 향교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였다.²⁾

여러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향교의 전국적 분포, 향교가 지니고 있는 유교 이념의 전파와 교육적 기능, 향교의 교육 과정과 교생의 생활상 등이 상세하게 밝혀졌다.³⁾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개 전국을 일반화한 것이

2) 조선전·중기 강원 지역 향교의 정착 과정과 특성에 대해서는 안세현, 「강원 지역의 유교 문화와 지역성-향교·향약의 정착 과정을 중심으로」, 『東아시아古代學』 33, 東아시아古代學會, 2014, pp.357-372 참조.

3) 동양고전학회에서는 2010년에 조선시대의 향교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는데, 이들 연구 성과는 『동양고전연구』 40, 동양고전학회, 2010에 수록되어 있다. 주요

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제 조선시대 향촌사회에서 향교의 역할에 대한 보다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조 연간 강릉향교의 석전제 제수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사건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⁴⁾ 강릉향교의 석전제 제수를 줄이는 문제에서 촉발된 이 사건은 중앙 관료와 지역 유생들이 충돌한 것인데, 이는 곧 중앙의 표준화된 문화와 지역의 특수한 문화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본고에서는 사건의 전개 과정을 상세히 재구한 뒤 쟁점이 되었던 세 가지 문제를 살펴보는 순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석전제 제수를 둘러싼 사건의 시말

1791년(정조 15) 강릉향교 석전제 제수를 둘러싼 사건은 『증보 강릉향교지』에 대략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또한 당시 유생들이 관찰사에게 올린 公文과 임금에게 올리려고 했던 上疏文이 향교지의 ‘文類’에 수록되어 전한다.⁵⁾ 그런데 이 사건의 내막은 상당히 복잡하다. II장에서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일성록』 등의 자료를 토대로

논문 목록은 아래와 같다. 김세봉, 「향교의 전국 분포 및 역사」; 김인규, 「향교의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신창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조선시대 향교의 교육이념과 역할」, 권혁명, 「향교의 생활상 연구」.

- 4) 조선 후기 강릉향교를 중심으로 한 강릉 지역의 유림 활동은 임호민이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는데 다음을 참고할 만하다. 「17~18세기 강릉사족의 결속과 분화」,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17~19C 강릉지역 재지사족의 조화와 갈등 구조」, 『지역사 자원의 교육자료 활용방안 탐색』, 서경문화사, 2009, pp.121-188; 「18~19C 강릉 鄉儒의 爭端과 향교의 역할」, 『역사민속학』 43, 2013, pp.232-257.
- 5) 『증보 강릉향교지』, 강릉향교, 2009, pp.327-329; pp.590-597. 다만 이 사건과 관련된 향교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단적으로 향교지에서는 朴天希라는 사람이 公文과 上疏文을 작성하는 등 주동자 역할을 했다고 하였는데, 향교지 이외의 다른 자료에는 박천희라는 이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안핵어사 김희체가 작성한 서계에도 박천희란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이 사건의 시말을 정리해 보았다.⁶⁾ 특히 안핵어사로 파견되었던 金熙采(1744-1802)가 올린 書啓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어서 강릉 유생들의 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었다.⁷⁾ 또한 이 서계에는 강릉 부사 이집두의 口招(진술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을 추적할 수 있었다. 월(음력)별로 정리하였으며, 일자를 고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함께 표시하였다.⁸⁾

■ 정조 14년(1790) 9월

강원도 관찰사 윤사국이 순시 차 강릉부에 들러 海弊(수산물 공납의 폐단)를 혁파하는 문제로 연해 지역의 수령들을 모아 회의를 개최함. 강릉 부사 이집두는 어부들이 공납하는 물품을 보고하면서 향교의 석전제에 쓰는 어수 대구포가 400여 마리가 되며 이를 봄과 가을로 나누어 쓴다고 함. 윤사국이 해폐를 바로 잡을 때 석전제의 제수를 적절하게 줄이자고 제안하자, 이집두는 오랫동안 시행해오던 규식이고 석전제에 제수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에 보고한 뒤에 허락을 받아 시행하자고 함. 이에 윤사국은 이집두에게 석전제 제수의 수효를 적어서 보고하라고 하여 이집두는 책자로 만들어 원주 감영으로 보냄.

■ 정조 14년(1790) 12월

윤사국은 강원도 연해 지역의 폐단을 보고하는 狀啓를 올림. 석전제의 어수

6) 이 사건과 관련된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 연월일은 아래와 같다. 『정조실록』 15년(1791) 6월 5·20일, 8월 6·19일. 『승정원일기』 정조15년(1791) 6월 5·6·18·20일, 7월 13·14·16·24·28일, 8월 6일, 9월 2일, 정조 16년(1792) 1월 15일. 『비변사등록』 정조 14년(1790) 12월 29일, 정조 15년(1791) 6월 5일, 7월 13·15·24일, 8월 6일, 정조 16년(1792) 1월 16일. 『일성록』 정조 15년(1791) 6월 5·20일, 7월 13·24일, 8월 6일, 정조 16년(1792) 1월 15일. 『정조실록』이나 『일성록』보다는 『승정원일기』와 『비변사등록』에 당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더 풍부하게 실려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된다. 한편 1981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한 『各司謄錄』 27·28·55(補遺)에 원주 감영과 강릉부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7) 『書啓輯錄』 7, 「江陵府按察御史金熙采書啓」, 규장각 소장 필사본.

8) 안핵어사 김희채를 비롯하여 사건 당시 강원도 관찰사였던 윤사국과 강릉 부사 이집두는 모두 문집이 전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이들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를 줄이는 일은 祀典에 관계되어 감영에서 정하기 어려우니 해조(곧 예조)에서 규식을 마련하여 내려 보내 줄 것을 요청함. 이때 석전제의 제수와 관련된 節目도 함께 첨부함. 29일에 비변사에서 윤사국의 장계와 관련하여 석전제의 어수는 예조에서 규식을 정하여 감영에 고시토록 하고, 나머지 조항은 절목대로 시행하겠다고 보고함. 정조는 이를 재가함.

■ 정조 15년(1791) 1월

예조에서는 『국조오례의』에 의거하여 규식을 만들어 강원도 감영으로 내려보냄.

■ 정조 15년(1791) 2월

봄 석전제를 지낸 뒤 윤사국은 강릉부에 공문을 보내 석전제의 제수 수량을 대폭 줄이라고 고시함. 어수의 경우 大聖位와 四聖位에서는 기존의 70% 가량을 줄이고, 從享 16위와 東廡와 西廡에는 어수를 전부 없애라는 내용이었음. 이집두가 이를 향교에 통보하자 유생들이 물려와 원래대로 돌려줄 것을 요청함. 이집두는 유생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감영에서 온 지시라 자신이 가볍게 결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유생들을 일단 돌려보냄.

■ 정조 15년(1791) 3월

윤사국이 순시 차 강릉에 왔을 때, 유생 5백여 명이 관아로 몰려들어 公文을 올리며 석전제 제수를 종전과 같이 해 줄 것을 요청함. 윤사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유생들은 관찰사가 머무르는 객사까지 몰려가 밤새도록 농성을 벌임. 윤사국이 끝내 아무런 대답 없이 떠나려고 하자, 유생 세 명이 길을 막고 관찰사의 가마가 가지 못하게 함. 이집두가 사태를 겨우 수습하여 윤사국이 감영으로 돌아감.

■ 정조 15년(1791) 4월

강릉 유생들은 관찰사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京鄕에 通文을 보내어 관찰사 처분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유럽 세력을 규합함. 이집두는 통문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편지를 써서 윤사국에게 보고하고 입수한 통문 초본을 함께 보냄.

■ 정조 15년(1791) 5월

윤사국은 비밀리에 강릉부로 공문을 보내 길을 막아선 유생 3명, 통문을 주도한 유생 1명을 체포하여 감영으로 압송하라고 지시함. 이집두는 4명 중에서 閔百祚를 제외한 3명을 체포하여 압송함.⁹⁾ 그런데 강릉 성을 나오자마자 유생 4~5백여 명이 일제히 몰려들어 죄인 3명을 탈취하여 향교에 숨김. 그러고는 24일 경에 1백여 명의 유생이 서울로 가서 상소할 것을 논의하고 향교의 명륜당에 疏廳을 설치함. 29일 경에 상소문 작성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감.

■ 정조 15년(1791) 6월

관찰사 윤사국은 장계를 올려 강릉 유생들의 사태를 막지 못한 부사 이집두에게 죄줄 것을 요청함. 5일 정조는 서울로 올라온 유생들은 형조에서 체포하여 강원도 감영으로 압송하고, 이집두는 파직하여 의금부로 잡아오도록 명함. 6일 형조에서 五部에 명하여 수색한 결과 총54명의 유생을 체포하여 신문하였으며 이들을 모두 강원도 감영으로 압송함.

20일 좌의정 蔡濟恭, 이조판서 鄭昌順, 비국 당상 金華鎮 등이 입시하여 사건에 가담한 강릉 유생의 처벌을 비롯하여 관찰사 윤사국의 처분 문제를 논의함. 윤사국은 이집두와 마찬가지로 관할 내에서 발생한 사태에 책임이 없지 않으나, 유생과 함께 처벌할 경우 기강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처벌을 유보하기로 함. 아울러 자세한 사태의 조사를 위해 부수찬 金熙采를 按覈御史로 강릉에 파견하기로 결정함.

24일 강릉 안핵어사 김희채는 강릉부에 도착하여 며칠 동안 잠행하며 사건을 탐문하고, 28일에 출도하여 관련자들을 체포한 뒤 강릉부사 俞漢謨, 양양현감 申大季를 參覈官으로 차출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감.

30일 강릉향교와 五峯書院 및 松潭書院의 都有司·掌議·有司 등의 임원들을 조사함. 임원으로서 강릉 유생들을 신척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하여 사태를 키운 것을 질책함. 향교의 도유사 幼學 趙天遇(65세)는 문書の 발의 주동자는 金聲百이고, 通文 중의 悖語는 朴乃玉, 權漢玉, 權楨 등이 상의해서 지었으며, 百人疏는 前 佐郎 宋徵一과 幼學 權漢舒가 倡論하였다고 진술함. 또한 장의 幼學 金聲百(61세)은 향교의 주된 일이나 건어물의 省減은 閔百祚가 담당하였

9) 민백조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강릉 座首 崔衡一은 민백조가 관아와 가깝기 때문이라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집두는 민백조는 죄망에 잘못 걸린 데다 지병이 있어서 대관령을 넘어 압송하기에는 기일을 지체시키는 것이 우려되어 제외했다고 해명하였다. (『書啓輯錄』 7, 「江陵府按覈御史金熙采書啓」 7월 4·14일)

으며, 순시 때 소란을 일으킨 것은 朴乃玉, 郭思儀, 權漢弼이며, 죄수를 탈취하는 계획은 權漢傑, 李泰膺이 주창하였다고 진술함. 이후로도 유사 沈志聞(28세)과 崔邦璫(33세), 오봉서원의 도유사 崔光彙(64세), 장의 金翼鎭(50세), 유사 崔翰震(37세) 및 송담서원의 도유사 金澤麟(60세)과 장의 辛百寧(56세) 등의 진술을 받음.

■ 15년(1791) 7월

1~7일까지 향교와 서원 임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죄인 權漢舒(59세), 權漢玉(44세), 李泰膺(46세), 朴乃玉(57세), 郭思儀(58세), 金漢星(54세) 등을 집중적으로 신문함. 특히 權漢弼(45세), 權漢傑(52세), 權楨(32세) 등은 한 집안 사람으로 권한필은 권한걸의 동생이며, 권정은 권한걸의 아들임. 4일에는 座首(향청의 우두머리) 崔衡一(48세)을 추고하였는데, 향촌 사회의 모든 일을 살피는 자리에 있으면서 유생들을 계도하지 못한 것을 질책함. 필요한 경우 대질 신문을 하였으며, 주요 죄인의 경우에는 刑問 1차와 訊杖 30도를 가하였음. 6일에는 지병이 있었던 민백조가 신문을 받다가 사망하였음. 7일에는 사안별로 참여의 정도에 따라 죄인을 가려내고 이들의 처벌 수위를 정함. 그러고는 이상의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書啓로 조정에 보고함.

13일 비변사에서 안사어사 김희채의 서계를 보고하였는데, 사안별 죄인과 처벌 수위를 다음과 같이 요청함.

- 죄수를 탈취하여 聖廟에 숨긴 죄: 權漢傑·李泰膺
- 通文을 돌려 관찰사를 비난한 죄: 朴乃玉·權漢玉·權楨
- 객사에 물려와 관찰사의 순행을 막은 죄: 郭思儀·權漢弼
- 상소를 모의하여 민간으로부터 돈을 거두고 향교와 서원의 논을 팔아 여비를 마련한 죄: 權漢舒

이상의 죄인은 지방의 풍속을 바로잡고 나라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刑訊을 시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엄한 형신을 3차례 시행한 뒤에 먼 곳으로 유배시킬 것을 청함. 또한 金漢星의 경우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首倡이므로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청함. 그러고는 기타 죄인들에 대한 처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권한걸과 권정은 권한필의 형과 조카이므로 형신을 1차 행하고 방면. 文官으로 士論에 가담한 전 좌랑 宋徵一은 仕版에서 삭제함.¹⁰⁾ 관찰사 윤사

10) 1792년(정조 16) 1월 15일에 안핵어사였던 부수찬 김희채가 입시하여 송징일은

국은 당연히 처벌해야 하나, 유생과 함께 처벌하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 일단 유보. 전 강릉부사 이집두는 과직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徒配에 처해야 함.

비변사의 요청에 대해 정조는 草記에 따라 시행하도록 재가함. 다만 이집두의 경우 의금부에서 口招를 받아 보고한 후에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함.

1791년 7월 13일에 강릉 유생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면서 강릉향교의 석전제 제수를 줄이는 문제로 야기되었던 사태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후로도 두 가지 문제가 여전히 논의되었다. 하나는 이집두와 윤사국에 관한 처벌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강릉향교 석전제 제수의 規式을 정하는 문제였다.

관리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집두의 처벌 수위를 놓고 7월 말까지 논의가 계속되었다. 윤사국의 장계와 이집두의 진술서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윤사국에게 이집두의 진술서를 전해주고 윤사국의 의견서를 다시 받았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어수의 폐단을 먼저 제기한 자가 누구인지, 관찰사가 길을 막은 유생들에게 접을 먹고 정말로 가마를 돌려 다시 객사로 들어가려고 한 것인지 두 가지였다. 조사 결과 어수의 폐단을 처음 꺼낸 것은 이집두이고 윤사국은 가마를 돌려 객사로 다시 들어가려고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의금부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떠나 이집두는 부사로서 사태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大明律』과 『大典通編』에 근거해서 ‘杖八十, 收贖, 奪告身三等’의 처벌을 요청하였고, 정조는 법률에 따라 처벌하되 자급은 1등만 강등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하였다.

그런데 8월 6일에 사간 權恢가 사직 상소를 올리면서 윤사국과 이집두를 모두 유배 보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정조는 윤사국은 문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집두는 이미 과한 처벌을 받았으며 요청을 받

백인소를 발의한 죄가 크기 때문에 유배형에 처해야 한다고 요청하여, 송징일은 결국 유배를 가게 되었다.(『승정원일기』 정조 16년(1792) 1월 15일.)

아들이지 않았다. 윤사국은 8월 19일에 비난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직 상소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집두는 9월에 좌부승지에 임명되어 내직으로 복귀하였다.

강릉향교의 석전제와 관련해서는 안핵어사 김희채의 지시에 따라 8월부터 원주향교의 예에 의거하여 강릉향교에서도 어수 대신에 肉脯와 肉醢를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동서의 從享 이하 兩廡에서는 나물만 가지고 제를 지내는 素祭만 지내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강릉향교뿐만 아니라 강원도 영동지방의 9개 군현에 모두 내려졌다.

결과적으로 강릉향교의 석전제 제수 문제로 처벌을 받은 것은 강릉지역의 유림들뿐이었다. 향교와 서원의 임원 전체를 비롯하여 향청의 우두머리인 座首까지 강릉 지역의 지도급 인사들이 모두 불러나와 조사를 받았으며, 유림의 구심적 역할을 하였던 유생들이 유배라는 중형을 받았다. 또한 많은 유생들이 서울에서 체포되어 원주의 감영으로 압송되고 안핵어사에게 불려가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다. 심지어 신문을 받다가 유생이 죽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요컨대 이 사건은 강릉 유림의 주축 세력이 처벌을 받고 석전제 규모도 상당히 축소되는 등 강릉의 유림 사회 전체에 큰 타격이 되었다.

Ⅲ. 중앙 관료와 지역 유생의 갈등 지점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강릉 부사 이집두가 海弊를 줄이는 일환으로 강릉향교 석전제 제수의 수량을 줄이는 것을 관찰사 윤사국에게 제의하였다. 이에 윤사국은 이 문제를 조정예장계를 올려 문의하였고, 『국조오례의』에 의거하여 줄이라는 예조의 회신을 받아 강릉부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강릉 유생들은 관찰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항의하였으며, 통문을 돌려 지역의 유림 세력을 규합하여 집

단적으로 상소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다. 이에 대해 조정에서는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사건으로 간주하여 가담한 강릉 유생들을 처벌하였다.

사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발단은 강릉향교 석전제의 제수가 과연 海弊인지, 향교의 석전제 제수의 표준적인 規式은 무엇인지 두 가지 문제였다. 그런데 사건의 시말을 살펴보면, 부사와 관찰사 그리고 조정에서는 핵심적인 두 가지 문제는 제쳐두고, 오히려 관찰사와 조정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유생들의 태도와 이에 대한 처벌을 주로 논의하였다. 애초 석전제 제수와 관련된 문제가 중앙의 지시에 반발하는 지역의 유생들을 처벌하는 문제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이에 III장에서는 중앙과 지역의 갈등 양상을 세 가지 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석전제 제수의 海弊 문제

강원도 관찰사 윤사국(1728-1809)과 강릉 부사 이집두(1744-1820)는 모두 사건 발생 한 해 전인 1790년(정조 14)에 부임하였다.¹¹⁾ 이집두의 口招에 따르면, 1790년 가을 윤사국이 강릉부에 순시를 왔을 때, 영동 지방의 수령들을 모아놓고 海弊를 혁파하는 문제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때 윤사국이 강릉부에서 어부들이 공납하는 物種을 물어서 이집두가 보고하는 가운데 향교 석전제에 쓰는 건어물 대구가 400여 마리가 되며 이를 봄과 가을로 나누어 쓴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윤사국은 해폐를 바로 잡을 때 향교의 제수 역시 酌定 減數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집두는 예부터 내려오는 定式이고 석전제의 제수 문제이므로 조정에 보고한 뒤에 조정의 명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¹²⁾ 그리하여 결국 윤사국이 海弊에

11) 『정조실록』 15년(1791) 3월 12일조에 이집두를 강릉현령(곧 강릉부사)에 임명한다는 기사가 보인다. 『公車文』 26(규장각 소장 필사본)에 수록되어 있는 「江原監司尹師國上疏」(辛亥4월17日)에 근거할 때, 윤사국 역시 정조 14년(1790)에 강원도 관찰사에 임명된 것이 분명하다.

12) 『書啓輯錄』 7, 「江陵府按覈御史金熙采書啓」 7월 14일자에 들어 있는 李集斗의

관한 장계를 올릴 때 강릉향교의 석전제 제물 문제도 거론하였던 것이다.¹³⁾ 이집두는 석전제 제수의 폐해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입금이 물기를 “강릉 향교의 석전제의 제수는 加米(정해진 공물 외에 더 거둔 쌀)로 마련하는 것이 없는가?”라 하였다. 이집두가 대답하였다. “가미로는 고기를 마련하기에 부족하고 물고기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기 대신에 물고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강릉향교에서 사용하는祭品을 보면 어포가 400여 조이고 肉醢(육류것갈)가 20여 조로 소 4마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가미로는 소 2마리에 해당되는 것밖에 마련할 수 없으며, 나머지는 吏奴들이 갖추어 납부하느라 참으로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¹⁴⁾

인용문은 사건이 마무리된 뒤인 1791년 9월에 이집두가 좌부승지로 입시하였을 때 정조와 문답한 내용이다. 이집두가 폐단으로 지적한 것은 강릉에서 고기 대신에 물고기를 사용하는 제수의 종류가 아니라 수량이다. 加米로는 반밖에 충당할 수 없으며 나머지 반을 충당하기 위해 吏奴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집두는 1790년 가을에 석전제의 제수 문제를 처음 제기하였을 때부터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까지 어수의 수량이 폐단이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강릉 유생들의 생각은 달랐다.

口招. “昨秋道臣之巡到本府也, 爲革海弊, 沿邑守宰使之會議之際, 道臣先問‘本府海夫所納物種幾許’是白去乙, 矣身歷數公納物種次, 及鄉校釋菜魚鱸大口之爲四百餘尾. 則道臣曰: ‘魚鱸所用, 何其夥然?’ 矣身答以爲‘此是春秋分用者, 故如是多矣’. 道臣曰: ‘今番海弊釐正時, 酌定減數何如?’ 矣身答曰: ‘自來定式如此, 且係釋菜所用, 恐不可舉論, 於狀聞中矣.’ 道臣曰: ‘豈其然乎.’”

13)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 윤사국의 狀啓와 上疏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윤사국의 문집 또한 전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윤사국이 조정에 올린 장계와 상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14) 『승정원일기』 정조 15년(1791) 9월 2일. “上曰: ‘聖廟祭需, 亦無加米之磨鍊乎?’ 集斗曰: ‘加米之數, 不足於肉而足於魚, 故代用魚物. 而以江陵祭品言之, 脯爲四百餘條, 肉醢爲二十餘條, 當用四牛. 而加米之數, 只堪二牛, 其餘則吏奴備納, 故誠爲難支矣.’”

① 삼가 생각하건대 閣下의 이번 조치는 모두 海弊를 바로잡으려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백성들의 고충을 구원하고 민폐를 개혁하는 것은 旬宣(군 監司)의 당연한 직무입니다. 그러나 공자를 모시는 제사는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동서의 從享과 동서 兩廡 각위의 어포가 지나치게 많아 제도에 어긋난다고 여겨 모두 폐지하신단 말입니까? 합하는 이렇게 하면 해폐를 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¹⁵⁾

② 대구로 말하면 본래 우리 고장의 토산품으로 평시의 값으로는 마리당 10 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價米(값으로 치러 주는 쌀)로 會減(주고받을 것을 보태고 뺀 뒤에 남은 것을 계산하는 것)하면 마리당 大米 3되 2홉으로 풍년에도 그 값을 충분히 충당하며 혹 흉년이면 평년의 배나 됩니다. 魚醢(물고기젓갈) 대구는 마리당 大米 2되인데 生魚에 비하면 죽은 고기의 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수를 줄인다면 價米는 저절로 남게 되고 남아 있는데도 어수대신 쓸 것이 없게 됩니다. 신들이 어리석어 남은 大同의 價米가 어느 곳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또 본 고을의 漁戶 중에 석전제 어수 공납과 관련하여 官籍에 실려 있는 것은 274호입니다. 그동안 이들이 서로 힘을 합쳐 공납해 왔는데 한 번 납부할 때마다 1마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니다. 이것이 어찌 폐단의 단서가 되겠습니까?¹⁶⁾

①은 강릉 유생들이 관찰사 윤사국에게 올린 「釋菜魚脯事呈文」의 일부이며, ②는 조정에 올리려고 한 「魚脯事上疏」의 일부이다. ①에서 관찰사의 조치가 海弊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이해하지만, 석전제의 제

15) 『증보 강릉향교지』 文類, 「釋菜魚脯事呈文」. “因竊伏念閣下此舉, 皆從釐正海弊中來, 救瘼革弊, 固是旬宣之職. 然若如孔夫子俎豆之具, 恐不可率爾下手, 而東西從及兩廡之各位魚脯, 亦以濫制以并廢之耶? 閣下以爲如是, 則海弊可以盡祛乎?”

16) 『증보 강릉향교지』 文類, 「魚脯事上疏」. “夫以大口魚言之, 則自是海邑之土產, 而以平時常價論之, 每尾不過十文錢零. 會減價米, 則每尾爲大米三升二合, 雖豐年足當其價, 若或歲歉, 可爲倍價. 魚醢大口則每尾大米二升者, 以其生魚比之, 斃魚價廉故也. 今若減其魚醢, 而價米則自在, 自在而又無代鱸之用. 臣愚抑未知大同之價米, 歸於何等處也. 且該邑漁戶之係於釋菜魚脯而載於官籍者, 爲二百七十四戶, 而其間亦有攝戶同力應役者, 則一番應納, 每戶不漏一尾. 此何有一分爲弊之端耶?”

수는 경솔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제수의 수량을 줄인다고 하여 해폐를 다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곧 제수의 수량은 해폐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②에서 유생들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어포의 수량이 폐단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먼저 價米로 대구포를 마련하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방에서 대구는 토산품으로 그 값이 매우 싸다. 그렇기 때문에 풍년이 들어 쌀값이 쌀 때도 대구포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으며, 흉년이 들어 쌀값이 비싸면 2배를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더욱이 生魚에 비해서 어수·어해 대구의 값이 더욱 싸기 때문에 오히려 價米가 남아도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관내의 어부들이 석전제 어수를 공납하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년에 사용하는 어포의 총수는 400여 마리인데, 이를 봄가을로 나누어 쓰므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은 200여 마리이다. 대구포를 공납하는 가구가 274호이므로, 산술적으로 한 가구당 1마리만 납부하면 된다. 이렇듯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강릉부사 이집두와 강릉 유생들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생들의 근거가 보다 구체적이나, 현재로서는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다만 석전제 제수의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문제일지라도, 그것이 백성들에게 정말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인지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의 시각과 향촌 사회를 이끄는 유생들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강릉 부사 이집두는 1790년 12월에 상소를 올려 해폐를 비롯하여 軍弊 稅弊 蓼弊 등 강릉의 네 가지 폐단에 관한 시정을 건의하였다.¹⁷⁾ 상소문을 올린 시점은 관찰사 윤사국과 해폐 문제를 논의한 직후였다. 다만 상소문에서는 해폐의 하나로 석전제 제수의 수량을 언급하지는 않았다.¹⁸⁾

17) 이집두가 올린 상소는 『정조실록』 14년(1790) 12월 25일조에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집두의 상소에 대한 정조의 비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생의 고초가 어느 고을인들 그렇지 않겠는가마는 강원도는 토지가 제일 척박하고 백성도 제일 가난하다. 게다가 부역마저 고되며 바다와 육지에서 나는 물건을 모두 징수하고 있다. 이를 생각할 때마다 먹는 것도 달지 않고 잠자리도 편치 못하다. 실로 백성들에게 이롭다면 사소한 개선이라도 주저할 것이 없다.¹⁹⁾

정조는 강원도의 경제적 낙후함과 공납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척박한 환경에서 가난하게 사는 백성들이 육지와 바다에서 나는 것을 모두 공납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수령은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작은 폐단이라도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집두가 석전제의 제수 문제를 제기한 데에는 이러한 배경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2. 석전제 제수의 規式 문제

관찰사 윤사국은 강릉향교 석전제 제수의 수량이 과도하다고 보고, 제수의 수량 문제를 조정에 문의하였다. 예조에서는 『국조오례의』에 의거하여 태학의 격식에 따르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 조치에 따라 줄이거나 없애는 제수는 다음과 같다.

－ 大聖位: 어수 건대구 12마리 → 3마리

－ 四聖位: 어수 건대구 각 10마리 → 각 3마리

18) 오래전부터 시행했던 관례이고 석전제라는 제사의 위상 때문에 이집두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문제는 관찰사 윤사국이 보고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거론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19) 『정조실록』 14년(1790) 12월 25일. “生民之困悴, 何邑不然? 至如關東一路, 土最瘠, 民最貧, 重以賦役偏苦, 水陸俱微. 每一念至, 食何甘而寢何便乎? 苟利於民, 些少更張, 不足顧.”

- 東西從16位: 어수 건대구 각 3마리 → 0마리
- 東西廡112位: 어수 건대구 각 1마리 → 0마리
- 魚醢 및 생대구: 40마리 → 3마리

이상은 안핵어사 김희채가 1792년 1월 입시하여 정조에게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다.²⁰⁾ 어수 건대구 총212마리 중에서 대성위·사성위·종향16위에 100마리를 사용하고, 동서무에 112마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魚醢와 생대구는 대성전과 양무를 막론하고 각각 1그릇씩 사용하였다. 그런데 조정의 조치에 따라 줄일 경우, 대성위와 사성위에만 건대구 15마리와 생대구 3마리만을 남겨 나누어 쓰고, 동서의 從享 이하는 모두 없애지게 된다. 건대구만 따져보면 기존의 212마리에서 15마리로 70%를 넘게 줄이게 되는 것이며, 從享 이하는 나물만 가지고 제를 지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강릉 유생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일찍이 들건대 옛날부터 나라에 五祀(사직에 드리는 5가지 제사)가 있었으나 석전제가 오사에 들지 않은 것은 그 의리가 중하기 때문입니다. 공자를 존봉한 이후로 천하가 다 이와 같이 하여 궁벽한 고을이라도 學宮에서 석전제를 올리지 않는 곳이 없는데, 제수의 종류와 수량은 고을의 사정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 나라에서 의론하여 처리하고 賢儒들이 품의하여 정한 것으로, 고을마다 똑같이 하는 것을 온당하지 않게 여김이 자명합니다. …… 『五祀儀』(곧 『국조오례의』)에는 우리나라의 禮典이 실려 있으나 어포의 수를 정해놓지는 않았습시다. 그런데 兩從과 兩廡 從祀의 어포를 모두 없애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겨를이 없다고 하나 이미 圖式이 있으니, 양종과 양무 祭品の 수효는 다만 正位圖式에 따라 줄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²¹⁾

20) 『비변사등록』 정조 16년(1792) 1월 16일.

21) 『증보 강릉향교지』 文類, 「釋菜魚脯事呈文」. “伏以竊嘗聞古者國有五祀, 釋菜不與焉, 其義重矣. 自尊奉孔子以來, 天下共之, 雖僻邑遐鄉, 莫不狙[狙]의 오자]豆於學宮, 則其性品豆數, 不得不隨其邑力而隆殺焉. 此必當初國家之所議處, 儒賢之所稟定, 不可以許邑各不同爲未安也明矣. …… 『五祀儀』即我朝典禮之所在, 而魚

인용문은 강릉 유생들이 관찰사 윤사국에게 올렸던 문헌의 일부이다. 유생들은 석전제 제수의 종류와 수량은 고을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어포의 수량에 대해서는 『국조오례의』에서도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정과 유생들 모두 『국조오례의』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둘의 주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국조오례의』는 조선의 기본적인 예식인 오례, 곧 吉禮 嘉禮 賓禮 軍禮 凶禮에 대해 규정한 禮典이다. 세종의 명으로 착수하여 성종 때 완성된 책이며, 『경국대전』과 더불어 국가 예전의 기본이 되었다. 향교의 석전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는 吉禮의 「州縣釋奠文宣王儀」에 보인다. 제수의 위치와 종류에 대해서는 『國朝五禮儀序例』 권1, 길례, 「饌實尊壘圖說」에 그림과 함께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²²⁾ 인용문에서 ‘圖式’ 운운한 것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州縣釋奠正配位’조에 따르면, 左八簋에 鹿脯와 魚脯 등을 놓고, 右八豆에는 醢醢, 魚鹽, 鹿醢, 兔醢 등을 진설한다. ‘釋奠從享’조를 보면 每位の 左二簋에 鹿脯를, 右二豆에 鹿醢을 두는데, 이는 太學과 州縣이 같으며 兩廡 역시 從享과 같다고 되어 있다.²³⁾

제수의 종류를 보면 중향 이하에는 魚脯가 없으며, 正配位の 左簋에 어포를 두었다. 중향 이하에 어포를 없애는 것은 조정의 지시대로 『국조오례의』에 근거한 것이 맞다. “兩從과 兩廡 從祀의 어포를 모두 없애는 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유생들의 주장은 사실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국조오례의』 어디에도 제수의 수량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 놓지 않았다. 정배위에서 어포의 수를 대거 줄이는 것은 유생들 주장대로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당초 석전제 제수를 줄이려고 한 목적이

脯之不定厥數。從祀之并闕品式。未知緣何? 未遑, 既有圖式, 則兩從兩廡之祀品高下, 只作正位圖式上等殺者必矣.”

22) 『國朝五禮儀序例』(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 권1, 길례, 「饌實尊壘圖說」.

23)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성균관 석전제는 오성위에 12번 12두를, 향교 석전제에는 8번 8두를 진설하며, 중향위에는 성균관과 향교가 모두 2번 2두를 진설한다. 『향교석전: 강릉향교·인천향교』,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113.

海弊를 혁파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에 어포를 집중적으로 줄였던 것이다.

강릉향교에서 어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특이한 사례이다.²⁴⁾ 안핵어사로 갔던 김희채는 강릉부의 문적을 살펴봐도 우포 대신 어포를 사용한 것이 어느 때에 비롯되었는지, 어떤 의미를 취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²⁵⁾ 그러나 이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것이다.

원주의 경우로 말해보면 魚鱸가 본래 토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牛脯만 사용하는데 많게는 447조에 달합니다. 이제 본읍의 대구어와 원주의 우포를 비교해보면, 본읍의 祭品이 본디 적습니다. 다만 대구어가 토산품인 까닭에 우포 대신 대구어를 쓰는 것이니, 조종조에서 제품을 酌定한 뜻이 풍성하고도 아름답다 하지 않겠습니까?²⁶⁾

인용문은 「魚脯事上疏」의 일부이다. 강릉 유생들이 보기에 원주향교 역시 『국조오례의』의 규식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어포 없이 전부 우포만 쓰고 있으며 그 수량 역시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강릉에서 어포를 쓰고 원주에서 우포만 쓰는 것은 지역별로 토산품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향교의 석전제 제수 문제는 『국조오례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제향의 祭品을 시정하는 사안은 마땅히 사건의 조사를 마친 뒤 조정으로 돌아와 보고한 뒤에 규식을 정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을 석전제가 얼마 남지 않아 형편이 급박하여 부득이 원주향교 제향의 예를 원용하여 가을부

24) 현재 강릉향교에서는 여전히 어포로 대구포를 사용하고 있다. 강릉향교 제수의 종류에 대해서는 『향교석전: 강릉향교·인천향교』,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p.95-111 참조.

25) 「江陵府按覈御史金熙采書啓」 7월 7일조. “至於魚鱸一款, 考諸本府文蹟是白乎, 則以魚代脯, 未知創於何時, 取於何義是白遣.”

26) 『증보 강릉향교지』 文類, 「魚脯事上疏」. “且以本道原州言之, 魚鱸既非土產, 故全用牛脯, 多至四百四十七條. 今以臣邑之大口魚, 較原州之牛脯, 則祭品本已少殺. 特以土產之故, 代用大口魚者, 必是祖宗朝酌定之意, 豈不盛哉? 豈不休哉?”

터 처음으로 육포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공문을 통해 강릉부에 고시하였고 이어 書啓를 올려 조정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중한 제례는 끝내 일시에 사명을 받은 신하가 감히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감히 사실에 의거하여 아뢰오니, 묘당에서 품지하여 규식을 정하도록 하고 즉시 강 원도와 강릉부에 行會하여 영구히 준행하게 하소서.”²⁷⁾

인용문은 안핵어사로 나갔던 부수찬 김희채가 이듬해인 1792년 1월 15 일에 입시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보고한 것이다.²⁸⁾ 김희채는 강릉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입시방편으로 원주향교의 규식에 따라 강릉향교가 석전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사건이 마무리 된 이듬해에도 여전히 향교 석전제의 규식을 묘당에서 다시 논의하여 정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이는 결국 1791년에 『국조오례의』에 따라 시행하라고 명한 것이 줄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정책의 입안과 대응 방식의 문제

석전제 제수를 줄이는 문제에서 촉발된 사건으로 인해 많은 강릉 유생들이 처벌을 받고 강릉 부사가 파직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처럼 사태가 악화된 것은 애초 정책을 입안하면서 당사자인 강릉 유생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중앙에서 파견된 부사와 관찰사 그리고 조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기 때문이다. 1791년 8월 6일 사간 權恢는 사직 상소를 올리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권회는 막중한 聖廟 제향의 제수를 강릉 부사 이집두가 경솔하게 멋대로 축소한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

27) 『비변사등록』 정조 16년(1792) 1월 16일. “至於釐改享品, 所當歸奏後, 定式舉行. 而以其秋菜不遠, 事勢急迫, 不得已援用原州校享己例, 以自今秋始用肉脯之意, 發關知委, 繼以書啓仰聞. 而莫重祭禮, 終非一時奉命之臣, 所敢擅斷者. 茲敢據實仰奏, 請令廟堂稟旨定例, 仍卽行會於該道該府, 以爲永久遵行之地焉.”

28)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에는 1월 15일로, 『비변사등록』에는 1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전자를 따랐다.

다고 지적하였다.²⁹⁾

물론 향교의 관리 책임자는 해당 고을의 수령이다. 그러나 석전제는 향교의 임원을 비롯하여 지역의 유생들이 주관하는 중요한 의식이었다. 그런데 당사자인 강릉 유생들은 석전제 제수를 축소하는 논의에서 배제되었으며, 중앙의 결정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이다. 더욱이 강릉은 강원도에서 유림 세력이 가장 큰 지역이었다. 강릉은 향교뿐만 아니라 오봉서원과 송담서원 등의 서원도 있었다. 순시를 온 관찰사에게 항의하려고 모인 유생이 5백여 명이나 되었고, 상소를 하러 상경한 인원만 100명이 넘었다고 한 것을 보면, 강릉을 중심으로 한 유림 세력의 규모와 결속력이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봄가을로 두 차례에 치러지는 향교의 석전제는 지역의 유생 전체가 참여하는 중요한 의식이었다. 특히 강릉향교는 역사가 깊고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석전제가 성대하게 치러지기로 유명하다. 강릉향교는 1313년(충선왕 5)에 설립되어 7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조선시대는 물론 현재에도 전국 최대 규모로 석전제를 치르고 있다. 향교는 고을의 규모에 따라 대설위 향교는 133위, 중설위는 39위, 소설위는 27위를 봉안하였는데, 강릉향교는 예나 지금이나 전국 최대 규모인 136위를 봉안하고 있다.³⁰⁾

③ 우리나라의 향교 제도는 큰 고을에서는 東廡와 西廡가 설치되어 있어서 太學과 그 제도가 같습니다. 따라서 큰 고을은 享祀 의식도 본디 작은 고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강릉부는 예부터 문헌의 고장이라 일컬어졌으며, 석전제 제

29) 『승정원일기』 정조 15년(1791) 8월 6일. “聖廟奠享, 禮儀莫重, 而彼江陵前倅臣李集斗之初不慎重, 恣意增減, 以致儒生之駭舉者, 已是前所未有之事.”

30) 2013년에 강릉향교에서는 설립 700년을 기념하여 『江陵鄉校七百年史誌』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향교는 최대 136위를 모셨는데, 광복 이후 성균관 주도로 배향 인물 수를 대폭 줄여 성균관과 향교 모두 39위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강릉향교는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대성전에 21위, 동서무에 115위를 합하여 여전히 136위를 봉안하고 있다. 봉안신위의 규모로 보면 전국 최대이며 국학인 성균관보다도 크다. 『향교석전: 강릉향교·인천향교』,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112.

품의 규식이 법으로 굳어져서 지금까지 사백년 동안 내려오면서 바꾸지 않고 지켜왔습니다.³¹⁾

④ 도를 중히 여기고 문을 숭상하는 聖朝의 때를 만나 先聖에게 올리는 모든 祀典이 융성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신들의 고을에서는 무단히 제품을 줄였으니, 어찌 성대의 欠典이 아니겠으며 어찌 斯文에 缺禮가 아니겠습니까?³²⁾

③은 강릉 유생들이 관찰사 윤사국에게 올린 呈文 중 일부인데, 자기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강릉은 문헌의 고장이라는 점, 강릉향교는 태학과 규모가 같다는 점, 석전제의 규식은 사백년 전통이라는 점 등을 내세웠다. ④는 「魚脯事上疏」의 마지막 부분인데, 강릉향교만 제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원통함을 호소하였다. 자기 고장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만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집단적 반발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강릉 유생들이 반발하는 이유를 따져보지 않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지금 고을에서 보고한 것을 보면 유생들이 ‘비록 사나운 군교나 용감한 병졸이라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또 ‘수령과 백성 사이의 의리도 돌아볼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백성으로서 수령과 백성간의 의리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인조 때 있었던 李仁居의 변란에 이르지 않을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인거는 단지 관청의 병기를 빼앗아 가지고 미친 소리를 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당시에 진압한 자들에게 策勳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번 강릉 사건의 경우, 본 고을 수령은 마땅히 멀리 유배되는 벌을 면할 수 없으며, 온 경내의 유생들도 모두 停擧하여 징계해야 합니다.³³⁾

31) 『증보 강릉향교지』 文類, 「釋菜魚脯事呈文」. “且我朝鄉校之制, 惟雄州巨邑設東西廡, 與太學同其制, 既大則其享祀之儀, 固不可與小邑等矣. 本府古所稱文獻之邦, 釋菜品式著爲成憲, 于今四百年之久, 不替導守矣.”

32) 『증보 강릉향교지』 文類, 「魚脯事上疏」. “竊伏聞當此聖朝重道右文之時, 凡諸先聖祀典, 有隆無殺. 至於臣等之邑, 則有此無端減品之舉, 豈不爲聖代之欠典而斯文之曠禮也耶?”

인용문은 1791년 6월 20일에 좌의정 蔡濟恭(1720-1799), 이조판서 鄭昌順(1727-?), 비국 당상 金華鎭(1728-1803) 등이 입시하여 논의한 것 중 일부로, 체제공이 말한 부분이다. 체제공은 이 사건을 인조 연간 반란을 도모하였다가 사형에 처해졌던 황성의 李仁居(?-1627)³⁴에 준하는 사태로 인식하였으며, 가담한 유생 전체를 停擧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정조는 체제공의 주장에 대해 혹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하였다. 그러나 체제공은 “혹 한 사람이 인륜을 범하는 죄를 짓더라도 고을을 혁파하거나 읍호를 강등하는 법인데, 하물며 수백 명이 무리를 지어 변괴를 일으킨 경우이겠습니까.”라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³⁵ 정창순은 유생들의 通文 가운데 ‘저 도백이란 자[彼道伯者]’ 운운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일개 유생들이 관찰사를 능멸하는 사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³⁶

너희들은 궁벽한 바닷가에 살아 왕의 교화가 미치기에는 멀지만, 명색이 유자이고 더욱이 향교와 서원의 임원을 맡고 있다. 고을의 선비들이 혹여 도리에 어긋나는 논의를 하고 해괴한 짓을 하더라도 마땅히 도리에 맞게 잘못을 꾸

33) 『정조실록』 15년(1791) 6월 20일. “今觀邑報，則儒生輩以爲雖有猛校勇卒，無可奈何，又曰‘城化分義，有不可顧云，爲其民而不顧城化分義，則幾何不至于李仁居之變乎？仁居不過持兵仗發狂言，而其時至有策勳之舉。今此江陵事，本倅則當不免遠竄之律，而闔境儒生，並停擧，使之懲創。”

34) 이인거는 강원도 황성에 살았는데 1627년(인조 5) 반란을 도모하였다가 체포되어 사형에 처해졌던 인물이다. 이인거는 1627년 9월 후금과 화친을 주도한 인물을 처단하고 오랑캐를 토벌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다. 군사를 모은 뒤에 황성현에 보관된 군기를 탈취하고는 ‘倡義中興大將’이라 자칭하였다. 그러나 10월에 이인거는 체포되어 관련자들 모두 사형에 처해졌으며, 토벌에 공을 세운 洪寶 등은 昭武功臣에 책록되었다.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인거’조. 체제공이 이인거를 거론한 것은 그가 강원도 황성에 살았기 때문이다.

35) 『정조실록』 15년(1791) 6월 20일. “上曰：‘闔境停擧，豈無玉石之混乎？濟恭曰：‘若或一人罪犯倫常者，亦至革邑降號，則況數百人之結黨作變者乎？’”

36) 『승정원일기』 정조 15년(1791) 6월 20일. “昌順曰：‘儒生通文中‘彼道伯者’云云，其凌犯之跡，卽此可知.’ 실록에는 정창순이 말한 부분이 빠져 있다.

것이야지 이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 …… 관찰사는 조정의 명을 받아 도내를 안찰하는 임무를 수행하니, 도민들에게 等威가 지엄한 존재이다. 하물며 어수에 관한 일은 조정의 명을 받아 『국조오례의』의 禮典을 상고하여 海弊를 바로 잡으려고 제수의 수량을 줄인 것이다. 향교와 서원의 제생들은 지체없이 이를 받들어 실행해야 하거늘, 감히 祀典을 중히 해야 한다는 것을 빙자하여 異論을 창도하고 무리를 지어 순시 차 온 방백에게 글을 올렸으니 대단히 해괴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³⁷⁾

인용문은 안핵어사 김희채가 1791년 6월 30일에 강릉향교와 오봉서원 및 송담서원의 임원들을 불러놓고 조사하면서 한 말의 일부이다. 지역의 유생들을 계도해야 할 임원들이 일련을 사태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한 것을 질책하고 있다. 김희채는 서울과 멀리 떨어진 곳은 왕의 교화가 미치지 어렵다, 왕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관찰사는 等威가 지엄하다, 『국조오례의』의 禮典에 근거하여 海弊를 바로잡는 정당한 조치이다, 향교와 서원의 유생들은 조정과 관찰사의 명에 당연히 복종하고 이견을 내서는 안 된다 등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김희채의 말 속에는 중앙에서 지역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이 내재되어 있다. 공권력에 도전하면 안 된다는 정치·사회적 위계질서를 강요하는 것은 물론, 서울이 문화적 중심이고 서울에서 떨어진 거리에 비례하여 문화적 수준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국조오례의』로 대변되는 중앙의 표준을 지역은 군말 없이 수용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강릉향교의 제수 문제를 둘러싼 사태는 중앙의 문화를 표준으로 설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강요한 데서 온 갈등이었다.

37) 『書啓輯錄』 7, 「江陵府按覈御史金熙采書啓」. “汝矣等僻在海隅, 王化雖遠, 既有儒名, 且爲齋任, 則鄉中士子, 設或有妄悖之論·驚駭之事, 固當據理責非, 不宜推波助瀾是去乙. …… 方伯之任, 受命于朝, 按察一路, 則其於道民等威截嚴. 況於魚鱗一事, 承朝家之成命, 稽五禮之掌典, 矯揉海弊, 量減享品. 是隱則校院諸生, 惟當承奉之不暇, 而乃敢藉重祀典, 倡爲異論, 成羣作黨, 呈書於巡到之時者, 已萬萬駭悖不喻.”

IV. 맺음말

본고는 향교·서원을 중심으로 강원지역의 유교문화를 탐색하기 위한 장기 기획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에 정조 연간에 있었던 강릉향교의 석전제 제수 문제를 둘러싼 사건을 중심으로 중앙 문화와 지역 문화의 갈등 양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791년(정조 15) 강원도 영동 지역의 海弊를 혁파하는 방안의 하나로 강릉향교 석전제의 제수를 『국조오례의』에 근거하여 어수를 70% 넘게 줄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런데 이 결정은 강릉 유생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에 강릉유생들은 강릉부사를 찾아가 항의하고 관찰사에게 公文을 올려 조치의 부당함을 따지는 한편 원래대로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유생들의 주된 논지는 석전제 제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점, 『국조오례의』에 제수의 수량에 대해 정해놓지 않았다는 점, 대구어는 강릉의 토산품이며 석전제 공납으로 인한 폐해가 없었다는 점 등이었다.

그러나 강릉 유생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순시를 온 관찰사를 찾아가 밤새 농성을 하고 관찰사가 돌아가는 가마를 막기까지 하였다. 이후 경향의 유림들에게 通文을 돌려 처분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세력을 규합하였다. 또한 체포된 주동자를 탈취하여 향교에 숨기고 상소문을 들고 대거 상경하는 등 사태가 확대되었다. 조정에서는 서울로 상경한 유생들을 검거하여 강원도 감영으로 압송하고 강릉에 안핵어사를 파견하여 관련자들을 대거 조사하였다. 결국 사건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던 많은 유생들이 유배되었으며, 신문을 받다가 죽는 유생이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강릉 지역 유림 세력에게는 큰 타격을 입힌 사건이었다.

사실 이 사건은 강릉향교 석전제의 제수가 海弊인지, 제수의 표준적인 規式은 무엇인지가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는 주변으로 밀려나고 중앙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지역 유생들의 태도와 이에 대

한 처벌 문제로 변질되었다. 사태가 악화된 것은 애초 정책을 입안하면서 당사자인 강릉 유생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중앙에서 파견된 부사와 관찰사 그리고 조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국조오례의』로 대변되는 중앙의 문화를 표준으로 설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강요한 데서 온 갈등이었다. 이 사건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정책 갈등을 벌이고 있는 오늘날에도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다.

〈參考 文獻〉

- 『增補 江陵鄉校誌』, 강릉향교, 2009.
- 『江陵鄉校七百年史誌』, 강릉향교, 2013.
- 『향교석전: 강릉향교 · 인천향교』,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비변사등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일성록』,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各司謄錄』 27·28·55(補遺), 국사편찬위원회 영인, 1981.
- 『書啓輯錄』 7, 규장각 소장 필사본(奎 15083).
- 『公車文』 26, 규장각 소장 필사본(奎 12863-v.26).
- 『國朝五禮儀』, 申叔舟 等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목판본(古朝29-1-2).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DB.
- 강대민, 『한국의 향교 연구』, 경성대학교, 1992.
- 권혁명, 「향교의 생활상 연구」, 『동양고전연구』 40, 동양고전학회, 2010.
- 김세봉, 「향교의 전국 분포 및 역사」, 『동양고전연구』 40, 동양고전학회, 2010.
- 김인규, 「향교의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동양고전연구』 40, 동양고전학회, 2010.
- 김홍술, 「강릉의 제사」, 『강원사학』 24·25합집, 강원대학교 사학회, 2011.
- 신창호,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조선시대 향교의 교육이념과 역할」, 『동양고전연구』 40, 동양고전학회, 2010.
- 안세현, 「강원 지역의 유교 문화와 지역성-향교·향약의 정착 과정을 중심으로」, 『東아시아古代學』 33, 東아시아古代學會, 2014.
- 윤희면, 『조선후기 향교 연구』, 일조각, 1990.
- 이규대, 「17세기 江陵地方의 士族과 향약 조직」, 『영동문화』 3,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1988.
- 이성자, 「강릉향교 연구」,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임호민, 「17~18세기 강릉사족의 결속과 분화」,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_____, 「17~19C 강릉지역 재지사족의 조화와 갈등구조」, 『지역사 자원의 교육자료 활용방안 탐색』, 서경문화사, 2009.

_____, 「18~19C 강릉 鄉儒의 爭端과 향교의 역할」, 『역사민속학』 43, 2013.

Abstract

Locality of the Hyeokgyo in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ing on the Seokjeonje of Gangneunghyeokgyo-*

Ahn Se-hyun*

In this paper, I looked in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Hyanggyo in Gangwon Province in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ing on the case of the Gangneung Hyanggyo Seokjeonje.

In 1791(Jeongjo 15), Governor of Gangwon Province ordered the reduction of dried seafood used in the Seokjeonje by more than 70 percent based on KukchoOryeoi. In this regard, the students of Confucianism in Gangneung were collectively opposed that. The rationale is as follows: The quantity of the food for ancestral rites is not listed in Kukcho Oryeoi; The food for ancestral determine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ea; The dried seafood does not harm the people of Gangneung. However, officials dispatched from the center forced their existing positions, which eventually led to a clash between officials and local students. As a result, the Gangneung adverb was fired and the students who led the crisis were sent to exile.

This incident shows the cultural conflicts between the center and the region, and is also very suggestive in this day of policy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Key words】 Gangwod-do, Confucianism, locality, Gangneunghyeokgyo, Seokjeonje, food for ancestral rites, KukchoOryeoi

투고일 : 5월 25일, 심사완료일 : 6월 13일 , 게재확정일 : 6월 13일

* Associate professor of Chinese Classics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shahn@kangwon.ac.kr